

한국주택금융공사 특정직(지원직, 운전업무) 채용공고

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
미래의 창조적 주택금융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.
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2년 10월 11일

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

◆ 모집분야별 · 지원부점별 중복지원 절대 불가

※ 중복지원 발견 시 별도 통보 없이 모두 지원 취소 처리

1. 모집분야 및 주요업무 등

- 모집분야 : 특정직(지원직, 운전업무) 1명
- 주요업무 : 행정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운행 및 차량관리 등*
- * 입사 후 공사 내부사정에 의해 차량 관련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변동 가능

2. 지원자격

- 연령*, 성별, 학력 등 제한 없음
 - * 단, 공사 정년을 고려하여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
-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* 소지자
 - * 유효한 면허에 한함(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에정자는 응시 · 입사 불가)
-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 - ① 운전직 근무경력 5년 이상 (운전면허 정지기간은 제외)
 - ②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
 - ③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지 않은 자

[운전직 근무경력 관련 용어 정의]

- ▶ 운전직 근무경력이라 함은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에 소속되어 자동차 운행을 주된 업무로 한 근무경력을 의미
- ▶ 운전직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운전 업무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증빙서류 미제출 및 미비(근무기간 또는 담당업무 미기재 포함)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- 단, 폐업회사의 경우, 경력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폐업증명서 등으로 갈음하되,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담당업무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근무경력으로 인정
- ▶ 최근 5년이라 함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'17.10.26 ~ '22.10.25을 의미

- 근무 예정지(서울)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(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)
- 채용금지자(「채용세칙」 제16조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※ 「채용세칙」 제16조(채용금지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0.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지 지나지 아니한 자
11. 「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」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「채용세칙」 제23조(합격의 취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.

1.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
2. 채용비리 연루자
3.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
4.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(제출서류)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

3. 채용조건

- [고용형태] 특정직(무기계약직)*
 - * 약 3개월 간 수습기간 부여 후 근무평가를 통해 수습해제여부 결정
- [보수수준] 세전 기본연봉 약 33,000천원 수준* (실적급, 법정수당 등 별도)
 - * '22년 기준이며, '23년 임금인상 시 해당 내용에 따름
- [근무장소] 서울 (업무 등의 사유로 전국지역 출장 운행 가능)
 - * 공사 내부 사정에 따라 추후 본사 또는 전국 지사에 근무 가능

4.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2.10.11(화) ~ **10.25(화) 17:00 (오후 5시)**
 - 마감시간(10.25(화) 17:00)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**가급적 마감 전날까지 제출**
 - '임시저장'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**반드시 '최종제출' 처리**
-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
- 채용홈페이지(<https://khfc.saramin.co.kr>)를 통한 온라인 접수
 - ※ 개별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

5. 전형 절차 및 일정 (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

- 전형 절차



주) 전형절차별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상세 일정

구 분	일 정
■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	10.11.(화) ~ 10.25.(화) 17:00시
■ 서류전형	10.27.(목) (10.31.(월) 결과발표 예정)
■ 면접전형 (서울 대면면접 실시)	11.03.(목) (11.11.(금) 결과발표 예정)
■ 입사에정일	'22년 11월 중

※ 전형절차별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6. 우대사항

- ※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**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(우대사항에 체크)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**
- ※ 전형 단계별 **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(부적격자)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,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% 이내에서만 적용**

□ (공통 우대사항)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우대 (각 전형별 가점 부여)

구분	가점	세부가점대상	관련법
장애인	만점의 5%	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	만점의 10%	중증장애인	
사회적 배려 대상자	만점의 5%	기초생활 수급자 (본인 또는 자녀)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		한부모가족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		다문화가족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		보호대상자(새터민)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

주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**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서는 보훈 가점 미적용(단, 동점자 처리 시 우대)**

◆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

- “본인”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각별히 유의하시어 사전 확인하실 것
-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자의 자녀이거나,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,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 발생

- 우대사항은 증빙서류*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, **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** (면접전형 응시 불가)

*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☞ 7. 제출 서류 참조

- **보훈대상자***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3항에 의거, **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분야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** (단, 동점자 처리 시 우대)
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
7. 제출서류

- ※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(단순 오기,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) 합격을 취소하고,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
- ※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(10.25)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(접수마감일 당일 포함)
- ※ 서류전형 합격자가 **기한 내 요구서류 미제출 시, 증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**하여 불합격 처리 (면접전형 응시 불가)

- **지원자격** 관련 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,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 (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)

- **공통 지원자격** 관련 제출서류

- 운전면허증 사본 1부

- 운전경력증명서* 1부

* 운전면허경력, 교통사고, 법규위반 조회 기간을 “**전체경력**” 으로 하여 발급

- 운전직무 경력증명서(**직인 필수**)* 등 1부

* 증명서 상 **근무기간,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**하며, 운전 업무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**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이 아닌 **단순 내부 출력자료** 등은 인정하지 않음

□ **우대사항** 관련 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 (해당자에 한함)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,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 (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)
- 공통 우대사항 관련 제출서류
 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
 - 중증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각 1부
 - 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
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
 - 다문화가족 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
 - 가족관계증명서
 -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
 -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*
 - ***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**
 -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이민자)
 - 새터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
 - 보훈대상자* :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
 - *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분야는 **가점 미적용**(단, 동점자 처리 시 우대)

□ **기한 내 서류 미제출**(우대대상이 아님에도 우대대상으로 기재한 경우 포함) 시 증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(**이후 전형 응시 불가**)
※ **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**

□ 기타 증빙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 (해당자에 한함)

-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ALIO 공시를 위한 대학교 재학·졸업증명서 등 실물서류 제출 (최종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)

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반환 방법은 추후 불합격자 통보문에 안내 예정

8. 전형별 선발인원 등

□ 서류전형

-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
- 입사지원서 불성실기재자* 및 부적격자**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

* 불성실기재자

-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
-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%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
-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

** 부적격자 : 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

- 경쟁률 8배수 초과 : 채용예정인원의 8배수를 고득점순으로 선발
- 경쟁률 8배수 이하 : 부적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

□ 면접전형

- 인재상 부합도 및 공사이해도, 직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득점과 가점을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(채용예정인원의 2배수)를 선발하되, 부적격자는 가점 및 합격자 대상에서 제외
- 서울에서 실시하며, 응시자에게 소정의 교통비 지급

□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·신체조건·학력·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

※ 공사는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통하여 정부에서 주최하는 「공정채용·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」에서 2019년 기재부장관상, 2020년 교육부장관상, 2021년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함

9. 기타사항

-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&A를 이용(<https://khfc.saramin.co.kr>)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
- 채용비리 발생 시 공사 「채용세칙」 제35조(피해자 구제방안)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

구 분	피해자 구제 방안
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	-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,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(예비)합격자 지위부여
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	-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,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-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

-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
- 동점자 처리기준
 -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(10% 가점) > 보훈대상자(5% 가점) > 중증장애인 > 장애인 > 사회적 배려 대상자 > 직전 전형단계 성적 순* 으로 선발
 - * 서류전형 동점자는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의 “경력·경험기술서” 항목 득점 순
 - 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
-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는 경력사항,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 평가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
-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*을 확인하며,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불가
 - * 주민등록증(발급신청 확인서 포함), 청소년증(발급신청 확인서 포함)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(학생증, 공무원증, 모바일 신분증 등은 인정불가)
-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